

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4년 7월 5일

나. 회부일자 : 2004년 7월 5일

3. 제안 이유

- 도내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신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에서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지역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

4. 주요 내용

- 시상분야는 종합대상과 부문별대상(기업경영, 기술개발, 수출, 노사화합)으로 함(제2조)
- 수상후보자의 자격을 도내 기업으로 함(제3조)
- 대상심사를 위하여 대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(위원장 부지사, 위원 15인이내) 심사함(제4조)

- 대상후보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·단체 및 시장군수가 추천 (제6조)

- 대상은 매년 11월중에 시상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 지급(제7조)

5. 검토 의견

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안은 신기술 개발 및 생산성향상 등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충청북도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모범적으로 이바지한 우수 중소기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없으나

- 본 조례는 충청북도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있는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와의 중복여부와 시상금 규모에 대하여 재검토가 있어야 할것으로 판단되며

- 본 조례 제2조의 시상분야에는 종합대상과 4개부문의 부문별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기업의 기술혁신, 노사화합 등에서 탁월한 공헌을 한 개인에 대한 시상과 수상기업에 대한 특전이 없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

- 제3조의 대상후보자를 중소기업으로 할 경우 제조업, 건설업, 운송업 등 대상범위가 광범위하여 사업의 목적달성과 수상자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